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임광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7242)

2025. 4.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사적연금소득의 저율분리과세 한도 상향조정(임광현의원안)	2

I. 개요

1. 임광현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724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임광현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4. 1. 6.
- (3) 회 부 일 : 2025. 1. 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형 퇴직연금 등의 노후소득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간 수령액이 1천500만원 이하인 사적연금소득은 기본세율(6%~45%)을 적용받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따로 분리하여 3%~5%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2021년 기준 연평균 적정 노후생활비는 1인 2천127만원, 부부 3천324만 원으로 집계되는 등 현행 기준 1천500만원은 적정 노후생활비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까닭에 은퇴 후 봉급생활자의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분리하여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봉급생활자의 퇴직이후의 삶을 보장하고, 고령화 시대에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사적연금소득의 저율분리과세 한도 상향조정(임광현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연금소득 분리과세 (제14조) ○ 적용대상 : 사적연금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 분리과세 세율 : (55세~69세) 5%, (70~79세) 4%, (80세~) 3%, (종신수령) 4% ○ 한도 : 연간 1,500만원	☐ <u>분리과세 한도 확대</u> ○ 적용대상 : (현행과 같음) ○ 분리과세 세율 : (현행과 같음) ○ 한도 : 연간 2,000만원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임광현의원안 2025. 1. 6. 제출(의안번호 7242)

☐ 개정안은 저율분리과세되는 사적연금의 수령 한도를 상향하여 노후소득 준비를 지원하려는 것임.

☐ 현재 연간 연금소득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 수령 시 3%~5%¹⁾가 원천징수되고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1,500만원을 초과

1) 연령별로 70세 미만 5%, 70~80세는 4%, 80세 이상은 3%가 과세되며,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은 4%의 세율이 적용됨.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의2.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세율
	70세 미만	100분의 5
70세 이상	80세 미만	100분의 4
80세 이상		100분의 3

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

하는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6%~45%) 하거나 연금소득만을 별도로 분리과세(15%)하도록 선택할 수 있음.

2013년 이전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적용대상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었고 한도는 연간 600만원이었으나, 2013년 세법개정으로 적용대상을 사적연금으로 한정²⁾하고, 한도도 연간 1,200만원으로 상향하였고 2022년 세법개정으로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5%의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한도가 연간 1,500만원으로 상향 되었음.

□ 개정안은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현행 1,500만원인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첫째, 최근의 계속되는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저율 분리과세 되는 연금소득의 소득 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연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2023년	2024년
소비자물가지수	89.9	93.0	94.9	97.6	99.5	102.5	111.6	114.18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2020년=100 기준

자료: 「소비자물가조사」,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2) 참고로 공적연금에 따른 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됨.

2023년의 한국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6%, 2024년의 물가상승률은 2.3%로 비교적 안정추세에 이르렀으나 코로나19등을 시발점으로 지속되어온 공급망 체계의 변동으로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연금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여야하는 연령계층에게는 물가상승의 체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짐.³⁾

[2021년~2023년 간 월 평균 노후생활비 변동]

(단위: 원)

구 분		2021년	2023년	증가율
1인	최소 노후생활비	124.3만원	136.1만원	9.4%
	적정 노후생활비	177.3만원	192.1만원	8.3%
부부	최소 노후생활비	198.7만원	217.1만원	9.3%
	적정 노후생활비	277.0만원	296.9만원	7.2%

자료: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국민연금공단 (KOSIS 국가통계포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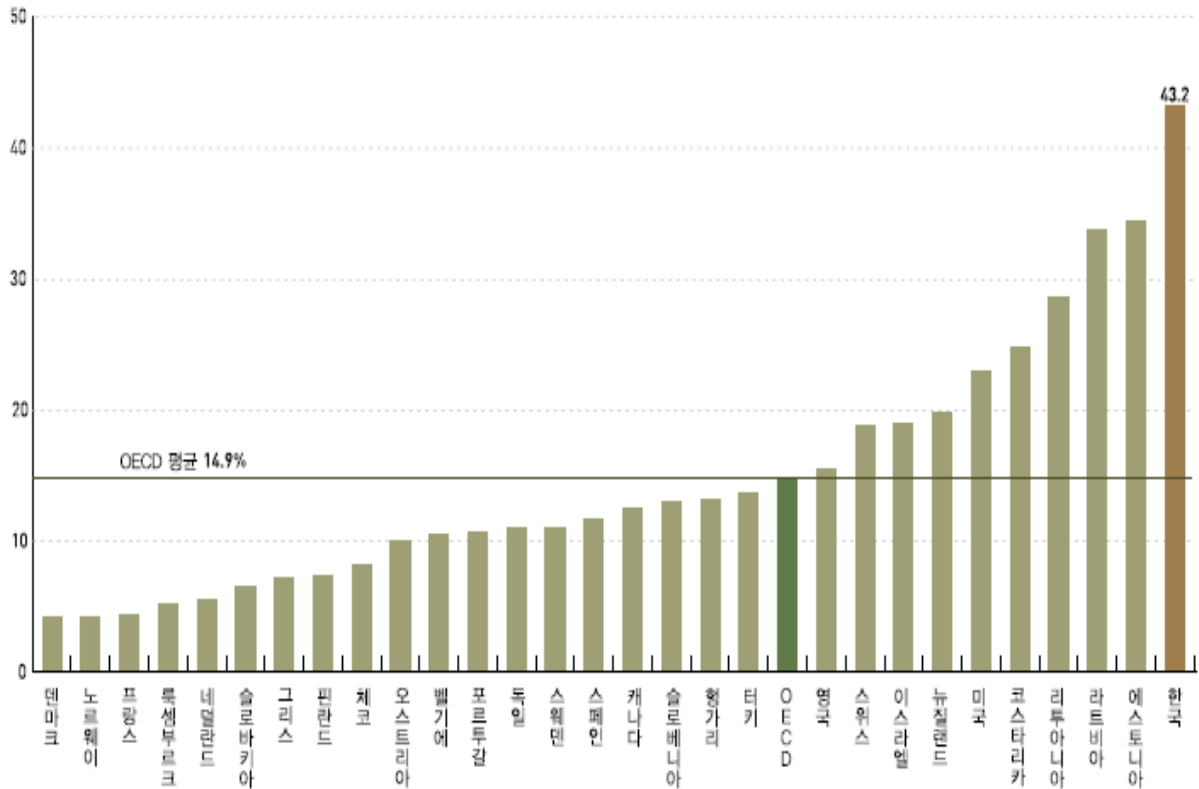
둘째,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감안할 때 노후연금 관련 세제지원 확대할 필요가 있음.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3.2%로, OECD 평균(14.9%)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가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임.⁴⁾ 이에 연금소득에 대해서 저율분리과세되는 소득기준을 상향하여, 연금소득 수령자의 노인빈곤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음.

3) '고령소비자 물가지수 산정 및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평가'에 따르면 고령층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은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1.14배 높았으며, 저소득 고령층의 경우 1.20배 높았음.

4)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2019년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23. 9. 20.

[OECD 국가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노인 빈곤률(2019년 기준)]

(단위 %)



자료: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2019년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23. 9. 20.

셋째, 퇴직연금의 경우 2022년 중 퇴직급여 수급을 개시한 계좌의 대부분(92.9%)이 일시금 수령을 선택⁵⁾하여 연금화를 통한 노후소득재원 마련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저율분리과세 되는 연금소득의 기준을 상향하는 경우 연금화를 통한 노후소득 재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이 7.1%(퇴직급여액 전체 12.1조원 기준 41.9%)로 나타남. 참고로 연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억 5,550만원임. (자료: 「2022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2023.7.)

[퇴직연금 연금수령 비율]

구 분	계좌기준		금액기준	
	일시금수령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연금수령
연금수령 비율	92.9%	7.1%	58.1%	41.9%

자료: 「2022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2023.7.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2022년 기준 종전 1,200만원 이상의 사적 연금소득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종합과세(세율 6~45%)를 적용하였던 것에 비하여 2022년 및 2023년의 세법개정으로 각각 1,200만원 및 1,500만원 이상의 사적 연금소득의 경우 15% 세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두 차례 확대한 바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둘째, 2021~2023년 연금소득 지급액 규모 별 거주자의 연금계좌 원천징수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연금을 지급받는 인원이 전체의 96%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연금소득 지급액 규모별 거주자의 연금계좌 원천징수 신고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인원	지급액	소득세	인원	지급액	소득세	인원	지급액	소득세
합계	675,172	3,623,931	201,900	817,500	4,381,038	246,751	988,354	4,990,269	159,408
~1백만	145,478	74,825	3,248	194,717	96,933	4,188	272,162	130,697	5,664
~2백만	118,245	180,808	8,197	143,644	218,457	9,897	172,659	262,481	11,877
~3백만	94,340	233,696	11,061	119,125	295,985	14,030	143,233	356,609	16,912
~4백만	80,036	279,058	13,449	91,328	318,886	15,365	101,650	354,837	17,080
~5백만	46,407	205,435	10,043	56,296	249,629	12,224	66,443	295,354	14,518
~7백만	55,581	338,262	16,447	62,910	379,659	18,411	68,824	410,375	19,898
~1천만	82,824	666,835	32,209	83,654	686,795	33,147	84,906	708,093	34,074
~1.2천만	18,130	199,370	9,346	22,209	244,230	11,328	26,770	295,059	13,610
~1.5천만	8,137	107,834	4,822	9,277	123,363	5,442	10,579	140,934	6,139
~2천만	6,053	104,788	4,548	7,563	131,406	5,769	9,056	157,671	6,741
2천만~	19,941	1,233,020	88,530	26,777	1,635,695	116,950	32,072	1,878,159	128,95

자료: 국세청

□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 상향조정여부 및 상향정도⁶⁾는 ① 물가상승, ② 노후생활비 증가, ③ 노인빈곤률, ④ 실제 연금계좌 수령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58

6) 참고로, 정부는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의 인상폭과 관련하여,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과세를 하더라도 실제 세부담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큰 폭으로 인상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